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천하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697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 목 차

|                                                      |   |
|------------------------------------------------------|---|
| I . 개요 .....                                         |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                                 | 3 |
| 1. 연결납세제도 보완 등 .....                                 | 3 |
| 가. 연결납세제도 개요 .....                                   | 3 |
| 나. 연결지배요건 판단 시 의결권 없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br>제외(천하람의원안) ..... | 6 |



## I. 개요

### 1. 천하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697호)

####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천하람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10. 24.
- (3) 회 부 일 : 2025. 10. 27.

####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인세법은 연결납세제도의 적용요건을 규정하면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90% 이상을 소유한 경우를 연결지배요건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때 의결권없는 주식과 지분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연결납세제도의 본질인 실질적 지배력과 무관한 요소까지 포함시키는 결과를 야기함. 특히, 의결권 없는 주식은 단순 투자수단에 불과하여 경영지배와 무관함에도 이를 분모에 포함함으로써, 지배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90%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제회계기준(K-IFRS), 상법 및 주요국 제도에서는 지배력 판단시 의결권 있는 주식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현행 규정은 국제적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됨.

이에 “의결권 없는 주식과 지분을 포함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연결지배요건을 의결권 있는 주식·지분 기준으로만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지배력 중심 과세체계를 확립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10호의2).

## II. 주요 내용별 검토

### 1. 연결납세제도 보완 등

#### 가. 연결납세제도 개요

□ 연결납세제도는 모법인·자법인이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법인·자법인을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서, 조직형태(사업부 또는 자회사)에 관계없이 세부담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임.<sup>1)</sup>

종전 우리나라는 법인단위로 과세하는 개별납세방식만 시행하였으나, 개별납세방식은 기업조직을 사업부제와 자회사 중 어떤 형태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조세부담이 달라지는 문제가 존재하였음. 가령, 사업부제의 경우에는 사업부에서 발생하는 결손이 다른 사업부의 소득과 통산되지만, 사업부 등을 분사 또는 자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자회사 등의 결손이 통산되지 않고 흑자법인에 대해서만 과세되어 사업부제에 비해 세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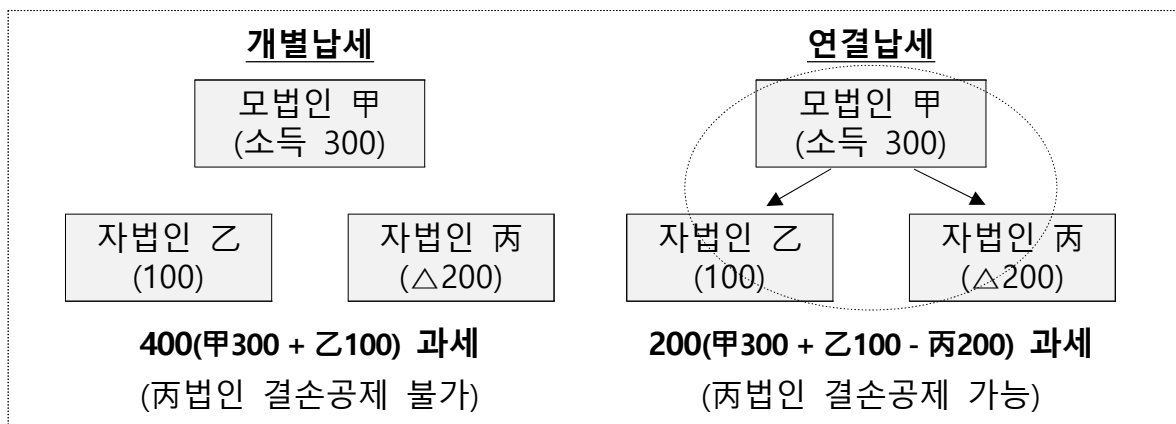
이에 기업의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함으로써 기업의 조직구성에 관한 조세의 중립성<sup>2)</sup>을 보장하고, 기업이 경영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08년 세법개정 시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어 2010년부터 시행되었음.

1)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논의 및 과제」, 2022. 12.

2) 조세의 중립성은 동일한 경제적 실질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부담이 되도록 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개념임.

연결납세제도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므로 연결집단의 모든 개별 법인이 각각 개별납세하는 경우에 비해 세부담이 감소할 수 있는 한편, 연결집단의 소득 합산으로 과표구간이 변경되면 누진세율 구조로 인해 세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음.

#### [개별납세와 연결납세 비교]



2008년 연결납세제도 도입 시 자법인에 대한 모법인의 지분율이 100%인 경우에만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후 연결납세제도의 활용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지분율 90% 이상인 경우에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음.

또한, 연결자법인의 개별귀속세액이 0보다 작은 경우 연결모법인으로 하여금 그에 상당하는 세액을 해당 연결자법인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연결지분율을 완화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연결소득의 배분 방법을 보완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한편, 2024년 세법개정을 통해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액 계산 시 연결집단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중견기업에 해당하  
는 연결법인에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하도록 하고, 연  
결집단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인 연결법인에 대해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제도 보  
완이 이루어졌음.

나. 연결지배요건 판단 시 의결권 없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외  
(천하람의원안)

| 현 행                                                                                                                                                                                                                                                                                                                                                                                                                   | 개 정 안                                                                                                                                                                                                                                   |
|-----------------------------------------------------------------------------------------------------------------------------------------------------------------------------------------------------------------------------------------------------------------------------------------------------------------------------------------------------------------------------------------------------------------------|-----------------------------------------------------------------------------------------------------------------------------------------------------------------------------------------------------------------------------------------|
| <p>□ 연결지배의 정의(제2조제10호의2)</p> <p>○ 연결지배: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p> <p>- 보유비율 계산방법:</p> <p>① <u>의결권 없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할 것</u></p> <p>②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제외할 것</p> <p>③ 우리스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5% 이내의 주식은 해당 법인이 보유한 것으로 볼 것</p> <p>③ 다른 내국법인을 통하여 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p> | <p>□ 연결지배 보유비율 계산 시 의결권 없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외</p> <p>○ (현행과 같음)</p> <p>- 보유비율 계산방법:</p> <p><u>&lt;삭 제&gt;</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 시행일: 2026. 1. 1.</p> <p>○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p> |

\* 천하람의원안 2025. 10. 28. 발의(의안번호 13697)

□ 개정안은 연결지배 요건 판단을 위한 주식 등의 보유비율 계산 시 의결권 없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하려는 것임.

□ 2008년 연결납세제도 도입 이후 2022년 세법개정 이전까지는 연결

납세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 「구(舊) 법인세법」 제76조의8제5항에 따른 완전지배를 인정받아야 했음.<sup>3)</sup>

완전지배 관계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의 전부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여,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인 경우를 포함함.

연결자회사의 지분비율을 100%로 했던 것은 연결납세이론에 충실하고 연결납세제도 도입 초기에 예측하지 못한 조세회피에 대비하며 소수주주 문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의결권 유무와 관계없이 자회사가 발행한 모든 주식을 기준으로 지분비율을 판정했던 것으로 보임.<sup>4)</sup>

이후 연결납세제도의 활용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지분율이 90% 이상인 경우에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음.

3) 「구(舊) 법인세법(법률 제17799호, 2021. 12. 30. 시행)」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완전모법인"(完全母法人)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完全子法人)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제2조제9호·제10호 및 이 장에서 "완전 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이 없는 주식등을 포함하되,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식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기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인 경우를 포함한다.

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의안번호 17165)', 2022. 11.

□ 개정안은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위한 지분을 계산 시 의결권 없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첫째, 연결자법인이 의결권 없는 우선주 등을 발행하더라도 연결납세방식을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의 투자자금 확보가 용이해지는 측면이 있음.

둘째, 국제회계기준 및 해외 입법례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을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으로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피투자자에 대한 힘의 핵심 판단기준 중 하나는 의결권의 보유임.<sup>5)</sup>

또한, 미국은 의결권 및 주가총액의 80% 이상을 직접 소유한 자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독일은 자법인의 의결권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연결납세를 적용할 수 있음.

셋째, 최근 3년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중 연결집단은 약 200여개로 여전히 연결납세제도의 활용도가 낮은 상황임.<sup>6)</sup>

---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6) 다만, 2022년 세법개정에 따라 2024년부터 지분율 요건이 완화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최근 3년간 연결납세 적용 법인 수]

(단위: 개)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평균  |
|-----|-------|-------|-------|-----|
| 모법인 | 179   | 200   | 209   | 196 |
| 자법인 | 656   | 734   | 774   | 721 |

자료: 국세청

개정안과 같이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제외하고 지분율을 산출할 경우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하고자 하였으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던 내국법인이 연결납세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됨.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현행법상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는 내국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든 연결가능자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해야 하고, 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연결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함.<sup>7)</sup>

### 7) 「법인세법」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연결가능모법인”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연결가능자법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가능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가능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결사업연도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연도(이하 제76조의9 및 제76조의10에서 “본래사업연도”라 한다)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킬 수 없는 연결가능자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를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병, 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경우에는 그 합병일, 분할일 또는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2항, 제76조의11제1항 및 제76조의12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따라서 현행 지분을 산정 방식에 따라 일부 자법인만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던 연결집단의 경우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결지배 요건을 새롭게 충족하는 자법인들이 모두 추가적으로 연결집단에 편입되는데, 이로 인하여 세무전략을 변경해야 하는 등 기업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기획재정부는 연결지배 요건을 최근에 100%에서 90%로 완화하였으므로 자회사의 소수주주의 이익침해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추가적인 범위 조정 여부는 일정 기간 제도를 운영한 이후에 부작용 발생 여부 등을 보아가며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54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 간의 적격합병
2.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의 적격분할

**제76조의11(연결자법인의 추가)** ① 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연결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연결모법인이 연결지배하는 내국법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연결모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결자법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 이후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과 사업연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